

가맹등록 규정

(제16차 개정 2018. 10.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등록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및 적용) 이 규정은 현장 제19조에 의한 대원, 지도자 및 각급 조직단위의 등록업무 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등록의 효력) 현장 제19조에 규정된 모든 등록은 지구연합회 및 지방·특수연맹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에 신청하고 그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09. 11. 13.)

제4조(등록연도) ① 본 연맹의 등록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09. 9.28)

다만, 1. 등록에 의한 활동기간은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2. 평생회비를 일시에 납입하는 지도자는 생존기간으로 한다. (신설 88. 2. 26.)

② (삭제 87. 2. 20.)

③ (삭제 87. 2. 20.)

④ 단위대 (단)의 등록일자는 지방·특수연맹의 승인일자에 의한다. (개정 09. 9. 28.)

제5조(연차등록비 및 회비) ① 대원 연차등록비는 제3항의 금액을 가입신청서와 함께 일시에 납부한다. (개정 09. 9. 28.)

② 지도자 회비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의하여 제3항의 금액을 가입신청서와 함께 일시에 납부한다. (개정 09. 9. 28.)

1. (삭제 95. 2. 28.)

2. 대(단) 지도자 (개정 87. 2. 20.)

3. (삭제 87. 2. 20.)

4. (삭제 87. 2. 28.)

5. (삭제 87. 2. 20.)

6. 중앙본부 임원 및 위원

7. 중앙훈련팀

8. 지구임원 및 위원

9. 지방·특수연맹 임원 및 위원(개정 09. 9. 28.)

10. 전종지도자 (개정 87. 2. 20.)

11. 로버스카우트 (신설 99. 12. 17.)

③ 대원 연차등록비와 지도자 회비 또는 지도자 평생회비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9. 9. 28.)

제6조(겸직자의 등록) 본 연맹의 지도자로서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임한 자는 그 직책마다 중복하여 등록하되 상위 조직단위 직책에 의한 연차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적자의 연차등록비 및 회비) 본 연맹에 등록을 필한 대원 및 지도자로서 제적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잔여등록 유효기간에 대한 연차등록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09. 9. 28.)

제8조(연차등록비의 감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대원에 대한 연차등록비는 사무총장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8. 10. 31.)

제2장 신규 등록 신청

제9조(단위대 등록) 단위대 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1. 신입대원에 대하여는 보호자의 명의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대에 이를 보관한다. (개정 95. 2. 28.)
2. 각 단위대는 단위대 등록신청서를 육성단체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지구연합회 및 지방·특수연맹을 경유, 중앙본부에 제출한다. (개정 09. 11. 13.)

제10조(단등록) 헌장 제145조에 의한 단 제도를 채택한 육성단체에 있어서는 단가맹 등록신청서를 육성단체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지구연합회 및 지방·특수연맹을 경유, 중앙본부에 제출한다. (개정 09. 11. 13.)

제11조(지구연합회 및 지방·특수연맹 경유) (개정 09. 11. 13.)

- 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지구연합회는 그 내용을 심사 검토하고,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지방·특수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연합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구의 단위대 등록은 지방·특수연맹에 직접 제출한다. (개정 09. 11. 13.)
- ② 전항에 의거 지방·특수연맹에 접수된 등록신청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등록서류를 중앙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가맹등록 규정)

제12조(추가등록) 등록을 마친 단위대에 있어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입대하고자 하는 대원 및 지도자는 추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9조 및 제10조 절차에 의하여 추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 2. 28.)

제13조(지방·특수연맹 설립등록 및 분할) ① 현장 제55조에 의하여 지방·특수연맹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연맹장 명의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에 설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1. 지방·특수연맹 설립 승인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첨부) (개정 09. 11. 13.)
2. 설립총회 회의록 1부
3. 연맹등록 양식에 의한 서류 1부
4. 재산 및 비품목록 서류 1부

② 지방·특수연맹 분할 설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09. 11. 13.)

1. 시, 도 인구 500만 이상일 때
2. 지구 20개 이상, 단세 35,000명 이상일 때
3. 지방·특수연맹 단세 50,000명 이상일 때 (개정 09. 11. 13.)
4. 지형적 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연맹의 설립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99. 12. 17.)

1. 국내는 총단세 1,000명 이상, 5개 시·도 이상에 조직
2. 해외는 해당 국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5. 7. 2.)
3. 지방·특수연맹 설립 기준 준용 (개정 09. 11. 13.)

제14조(지구연합회 설립등록) ① 현장 제10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구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회장 명의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방·특수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1. 지구연합회 설립 승인 신청서 2부
2. 설립총회 회의록 2부
3. 등록 양식에 의한 서류 2부

② 전항에 의한 지구연합회 설립등록신청을 접한 지방·특수연맹은 지체 없이 지방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본부에 설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1. 지구연합회 설립등록신청서(회장 명의) 1부
2. 지방이사회 회의록 1부 (개정 97. 12. 16.)
3. 전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첨부서류, 원본 각 1부

제15조(중앙본부 임원의 등록) 중앙본부에 소속된 임원 및 기타 지도자의 등록은

중앙본부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3장 연차 계속등록 신청

제16조(연차 계속등록 시기) 등록 승인된 조직단위 및 가맹원의 연차등록은 5월 말까지 필하여야 한다. (개정 87. 2. 20.)

제17조(단위대 (단)등록) 계속하여 연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단)는 제9조 및 제 10조에 준하여 연차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87. 2. 20.)

제19조(지방·특수연맹의 경우) 제17조에 의한 연차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구연합회 및 지방·특수연맹은 제11조에 준하여 지체 없이 중앙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제20조(전속, 재등록) 등록된 대원 및 지도자의 타대로의 전속이나 또는 탈락되었 던 대원 및 지도자의 재등록은 대원 및 지도자 명부의 기재란에 그 사유를 기재 하고 지방·특수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제4장 등록 승인

제21조(승인의 주관) ① 현장 제19조에 규정된 등록의 승인은 중앙본부가 관장한 다. (개정 99. 6. 22.)

② 중앙본부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업무 일부를 지방·특수연맹에 위임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제22조(단위대 승인) 등록이 승인된 단위대에 대하여는 지구연합회를 경유하여 다음의 서류를 교부한다.

1. 신규등록의 경우

가. 단위대 승인장

나. 등록증 (지도자 및 대원)

2. 계속등록인 경우

가. (삭제 87. 2. 20.)

나. 등록증 (지도자 및 대원)

제23조(단의 승인) 현장 제145조에 의한 단 제도를 채택한 육성단체에 대하여는

(가맹등록 규정)

제22조에 규정된 증서 이외에 신규등록인 경우에는 단승인장을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를 경유하여 교부한다. (개정 09. 11. 13.)

제24조(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 승인) 등록이 승인된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교부한다. (개정 09. 11. 13.)

1. 신규 등록의 경우
 - 가. 연맹 승인장(또는 지구연합회 승인장)
 - 나. 등록증 (임원 및 전종지도자)
2. 계속 등록의 경우
 - 가. (삭제 87. 2. 20.)
 - 나. 등록증(임원 및 전종지도자)

제25조(중앙본부 소속 등록자의 승인) 제15조에 의거 등록이 승인된 중앙본부 소속원에 대한 등록증은 중앙본부에서 교부한다.

제26조(등록의 폐지 및 통합) ① 승인된 단위대 및 각급 조직단위의 조직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속장이 등록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 그 조직단위의 구성원에 대한 등록도 일체 폐지된다.

③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폐지 또는 통합 처리한다. (개정 21. 2. 4.)

제27조(등록의 취소) 헌장 제24조, 제71조, 제120조 및 기타 연맹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 연맹의 방침에 위배되는 단위대

다만, 지구연합회, 지방·특수연맹 및 대원 또는 지도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적 또는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헌장 제89조에 의한 소속 지방명예회의의 결의를 거쳐 헌장 제35조에 의한 중앙명예회의의 심사 및 이사회 결의로써 확정된다. (개정 09. 11. 13.)

제28조(단위대 칭호) 등록된 단위대 또는 단의 칭호는 다음에 의한다.

1. 단위대의 경우 : 지방·특수연맹명, 지구명, 제(대번호)대, (대의 고유명칭) (컵스카우트, 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대라 칭한다. (개정 09. 11. 13.)
2. 단의 경우 : 지방·특수연맹명, 지구명, 제(단 번호)단, (단의 고유명칭) (컵스카우트, 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대라 칭한다. (개정 09. 11. 13.)

제29조(등록 양식) 등록의 처리를 위한 등록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제 양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69년 4월 17일 제정된 등록업무 규정에 대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197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76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0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5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15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